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290번

○ 제 안 자 : 한기영 의원 (찬성자 10명)

○ 제 안 일 : 2021년 4월 2일

○ 회 부 일 : 2021년 4월 6일

2. 제안이유

○ 현재 우리시는 '서울시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만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타 지방자차단체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일부 서울 학생에 대한 지원이 누락됨.

- 이를 보완(서울학생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의 '신고조건'은 유지하면서 기 조건에서 소외되는 '서울시 주민등록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타 지방자차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1.4.9. ~ 4.16.)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여 해당 기관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7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2021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이 조례에 의거 입학한 것으로 본다.

○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 본 개정안은 금년부터 시행한 입학준비금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교 밖 청소년 중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급 대상 〉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중·고등학제) 등에 입학하려는 학생, 1학년 또는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방법** :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지급)
- **지원금액** : 교육감이 입학준비 품목의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함.(2021년 30만원 상당)
- **지원제외**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 타 시·도 거주 + 서울지역 학교 1학년 입학 : 지급대상

· 서울시 거주 + 타지역 학교 1학년 입학 : 지급대상 제외 (타시도의 교복지원금 수령)

· 타 시·도 지역의 학교로 입학한 1학년이 서울학교로 1학년으로 전학한 경우

① 타 시·도에서 교복지원을 받은 경우 : 지급대상 제외

② 타 시·도에서 교육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지급대상

· 타 시·도 지역의 학교로 입학하여 서울학교 2~3학년으로 전학 : 지급대상 제외

· 국외에서 서울지역 학교 1학년으로 전학한 경우 : 지급대상

· 국외에서 서울지역 학교 2학년으로 전학한 경우 : 지급대상 제외

※ 본 개정안을 통한 대안교육기관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예시

· 개정 전

▸ 타 시·도 거주 + 서울소재 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상당 입학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상당 입학 : **지원대상 제외**

· 개정 후

▸ 타 시·도 거주 + 서울소재 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상당 입학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상당 입학 : **지원대상**

○ 본 개정안은 서울시 외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입학준비금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에게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조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대상의 명확성', '지원의 요건과 형평성', '사회보장제도 시행 전 협의', '시행규칙', '부칙 중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조제목과 내용의 부합여부

○ 안 제7조의2의 실제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예정인 학생’ 또는 ‘입학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조제목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바, 조제목이 신설하려는 핵심적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아울러 본 조례 제7조도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란 조제목 아래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지원대상과 조 제목 상 지원 대상이 명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행과 같음)
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이하생략)

2) 지원 대상(학생)의 적정성

○ 본 조례(제2조제3호)는 학생을 “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7조의2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하 ‘서울주민인 학생’)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이하 ‘서울지역 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에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이하 생략)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본 개정안 제7조의2에 따라 서울주민인 학생 중 ‘청소년이 아닌 아동’이 초등학교 상당의 서울지역 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바,

> 안 제7조의2(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1.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

- 현행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급대상에 맞춰 중·고등학교 상당의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명확히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본 개정안의 지원대상(서울주민인 학생)이 교육청 입학준비금의 대상과 서울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소속으로 지원받는 대상 간에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 서울시 관내 학교 중1, 고1 입학예정자 또는 신입생 · 지원 인원 산정자료**(실제 학생 수 : 약 137,000명으로 산정)**

〈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추계 〉

구분	중	고	특수	각종	고등기술	신설	소계
국립(학교수)	2	3	3	2			10
공립(학교수)	276	117	11	8		16학급	414
사립(학교수)	109	200	18	5	2		334
학생 수	69,524	65,179	542	1,012	25	416	**136,698**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중 · 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중 · 고등학제) 등에 입학하려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 · 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본 개정안의 지원대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안교육기관이며, 본 조례(제2조)는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에게 인가를 받지 않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제외되며,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안학교는 해당 교육감에서 교복지원비 등을 지원을 받게 됨.

3) 대안교육기관 간 형평성

○ 안 제7조의2의 입학지원금 등은 서울주민인 학생이 서울지역 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서울지역 외 대안교육기관은 '신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에 따라 '신청'만으로 필요한 비용(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바,

- 서울시 소재 대안교육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신고절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지역 외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지속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관리(교육환경, 재정여건 등)가 여의치는 않을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① 서울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

4) 지원대상의 특정 필요

○ 본 개정안의 지원대상은 ‘입학하려는 학생’ 또는 ‘1학년 학생’ 등이 아닌 ‘입학한 경우’로 입학준비금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의2(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안 제7조의2의 ‘입학한 경우’는 ‘입학과정을 거친 모든 재학생’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지원대상을 당해 연도에 입학한 학생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조문 상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바, 지원대상을 특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중·고등학제) 등에 **입학하려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5)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기간

○ 본 개정안은 기존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생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변경 또는 서울지역 외 대안교육기관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 본 개정안에 대한 협의는 조례가 개정된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협의 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청과 자치구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한바 있음.

6) 지원의 근거

○ 안 제7조의2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통해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조의2(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서울시가 실제 지원하는 대상은 타 지방의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지원사항을 직접적으로 조례로 규정하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바, 신청방법 등을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달방법 또는 지급방법의 규정

조례의 직접규정은 대상, 범위,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방법은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전달방법 또는 지급방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 시행규정의 입법미비

본 조례 제1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은 제정되지 않고 있어, 본 개정안 뿐만 아니라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적정 예산의 추계

○ 안 부칙 제1조에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의 목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에게 소외없이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예산을 필히 수반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서울시는 타 지역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지원할 예산은 현재 편성되지 않았으며,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조사 과정과 예산편성 이후 본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시행일 조정이나, 관련 예산 확보 후 의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산정책담당관은 타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인 학생의 수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제출하였음.

8) 경과조치의 적정성

○ 안 부칙 제2조는 신·구 양 조례 간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경과조치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서울지역 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서울주민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입학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부 칙 제2조(경과조치)2021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이 조례에 의거 입학한 것으로 본다.

- 부수적으로, 법제처와 서울시는 어려운 용어와 어색한 일본식 표현법을 정비하여 왔는바, “의거”라는 표현은 “따른(~에 따라)”이라는 용어로 순화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는 국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두고 분기별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할 행정용어를 선정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서울시 행정순화어 목록 〉

연번	바꿔야 할 말(순화대상어)	권하는 말(행정순화어)	선정일자
217	의거(依據)하다	따르다	2014.04.30

출처 : 서울시행정순화어 목록(510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2020.10.08.)

-

※ 법제처는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식 표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

• ‘~에 의한/의하여/의한다’는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의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에 따른/따라/따른다’로 바꾼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순화 용어
2659	의거하여	依據	의하여, 따라, 쫓아, 근거 삼아

출처 : 2019 법제처_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2019.12.), 62p, 207p 발췌

○ 결론적으로 모든 청소년은 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과 여건이 변함에 따라 이를 보장할 서울시의 책무는 강조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그 동안 소홀했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과정으로써 필요한 입법조치로는 사료되나, 본 개정안은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일부조문의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는바, 상위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추후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기본법」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887호, 2021.1.12. 제정, 2022.1.22. 시행

· 제정이유 : (중략)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와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함(제5조).

다.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제8조).

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음(제10조).

마.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1조).

바.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제14조).

사.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제15조).

아. 대안교육기관은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제16조).

자. 교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7조).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